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5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박지혜 · 권향엽 · 진성준
박해철 · 김 윤 · 임미애
안도걸 · 박용갑 · 이재강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 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p> <p>1.·2. (생략)</p> <p>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p> <p>가. ~ 마. (생략)</p> <p>바. <u>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 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u></p>	<p>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u>」 제2조 제2호에 따른 <u>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 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 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u></p> <p>사. <u>방송·통신·교통 등의</u></p>
<p><신 설></p>	

<p><u>사.·아.</u> (생략)</p> <p>② · ③ (생략)</p>	<p><u>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u></p> <p><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